#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28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민형배·강유정·손명수

조승래 • 조계원 • 이성윤

염태영 · 이해민 · 황정아

한준호 · 모경종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수직적이고 객체의 의미가 강합니다.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용어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법률용어를 정비해 권위적 인 표혂을 배제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1항 등)

#### 법률 제 호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 4. 법원

제5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법원단독판사"를 "법원단독판사"로 한다.

제3편제3장의 제목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장"을 "법원에 법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법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법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법원판사"를 "법원판사"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춘천지방법원"을 "춘천법원"으로, "지방법원단독판사"를 "법원단독판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본문 중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2항 본문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62조의2제2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②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 원"으로 한다.

③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 제4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④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및 제4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⑥ 검찰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 제2항 · 제4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⑦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관할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1조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중앙법원"으로 한다.

⑨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지방법원파사"를 "법원파사"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항, 제3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① 공증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제4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8조의26제2항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서울중앙법원"으로 한다.

제228조제1항·제4항, 제269조 및 제272조의3제1항·제2항 중 "지방 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④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⑤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① 국가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ㆍ제2항 중 "지방법원판사"를 각각 "법원판사"로 한다.

⑧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0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 21조 및 제36조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⑩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5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제1항·제2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법원장"으로 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4항, 제115조제1항·제2항, 제116조제1항, 제123조제2항, 제177조제1항·제2항, 제208조제1항 및 제429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 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4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 ②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②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및 제8조제5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2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②6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조제11호, 제39조제1항·제2항, 제53조제1항, 제55조제2항 및 제56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②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4조제1항, 제53조제1항 및 제76조제2항 중 "지방법원판사"를 각 "법원판사"로 한다.

제34조제3항, 제46조제1항 및 제77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②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34조, 제36조제3항, 제175조, 제197조, 제297조, 제376조, 제385조제1항, 제422조제1항, 제463조, 제476조 및 제502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③ 민사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법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지원장"을 각각 "법원지원장"으로 한다.

③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58조 제4항·제5항, 제59조제2항, 제79조, 제156조제1항, 제173조, 제175조 제1항, 제224조, 제244조제1항·제2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 303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③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➂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지방법원지원"을 법원지원"으로 한다.

③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항, 제28조, 제40조, 제49조 및 제52조 중 "지방법 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26조, 제35조제3항, 제47조의6제3항, 제48조제1항·제4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1조의2제2항, 제51조의3, 제55조, 제57조, 제61조제1항, 제70조, 제70조의3 중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한다.

제32조 중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하고, "지방법원지원장"을 "법원지원장"으로 한다.

③6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및 제64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제42조제2항·제4항 및 제43조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지방법원소년부"를 "법원소년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 제4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④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100조, 제103조제2항·제3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 및 제107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법원장"으로 한다.

④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제35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2조,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39조, 제46조, 제53조제 1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1항, 제68조, 제72조, 제102조제1항, 제10 9조, 제117조 및 제247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65조의3제1항 및 제65조의4 중 "지방법원장"을 "법원장"으로 한

다.

④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 ④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하고, "지방법원지원"을 "법원지원"으로 한다.

46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6조, 제287조의17제2항, 제287조의37제3항, 제360조의14제2항, 제360조의23제2항 및 제406조의2제5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④ 상업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82조, 제85조 및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지방법원 장"을 각각 "법원장"으로 한다.

₩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5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④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2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⑤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방법원소년부"을 "법원소년부"로 한다.

제7조,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⑤ 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②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조, 제7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8조 및 제46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제57조제1항 중 "지방법원본원합의부"를 "법원본원합의부"로 한다.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16조제4항ㆍ제5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 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을 각각 "법원" 및 "법원지원"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한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3조의2 중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장"을 각각 "법원" 및 "법원장"으로 한다.

☞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항 · 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 집행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2항, 제8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제24조 중 "지방 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3조, 제7조제1항·제2항·제3항, 제8조제1항, 제11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중 "지방법원장"을 각각 "법원장"으로 한다.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제4항·제6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⑩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 제136조, 제357조, 제416조제2항 및 제448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법원"으로 한다.

제77조, 제167조,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제3항·제4항, 제201조의2제8항, 제205조 및 제215조 중 "지방법원판사"를 각각 "법원판사"로 한다.

제200조의4제1항 및 제201조제1항 중 "관할지방법원판사"를 각각 "관할법원판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법원", "관할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지원", "지방법원자가", "지방법원소년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법원", "관할법원", "서울중앙법원", "법원지원", "법원장", "법원지원장", "법원자光", "법원소년부"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음의 7종류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4. 지방법원</u>	4. 법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u>지방법원</u> 및 가정법원의 사	② <u>법원</u>
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	
하여 그 관할구역에 지원(支院)	
과 가정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	
원(이하 "시·군법원"이라 한	
다)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다만, <u>지방법원</u> 및 가정법원의	<u>법원</u>
지원은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	
원으로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u>지방</u>	③ <u>법원</u>
<u>법원</u> ·가정법원·행정법원·회	
생법원과 <u>지방법원</u> 및 가정법	법원
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군법	
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	
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	
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특허법원· <u>지방</u>	② <u>법원</u>

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 ③ (생 략)

-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 •특허법원•<u>지방법원</u>•가정법 원•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장은 그 관할구역으로 한정하여 판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생 략)
  -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 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 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 사한다.
  - ⑤ <u>지방법원</u>·가정법원·회생 법원과 <u>지방법원</u> 및 가정법원 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u>법원</u>
<u>.</u>
② <u>법원장</u>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법원</u>
<u>법원</u>
·
⑤ 법원

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
・특허법원・<u>지방법원</u>・가정법
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 ② (생략)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 ① 고등법원·특허법원·<u>지방</u>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u>지방법원</u>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 ② (생 략)
-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u>지</u>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u>지방</u>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겖	· 9조의2(판사회의)	①	
<b>/</b> II			
	<u>법원</u>		
	<u>.</u>		
	· ② (현행과 같음)		
إرد	10조(각급 법원	드리	11 므크)
<b>/</b> ]]			
	①		- <u>법원</u>
			법원
			<u> 11 C</u>
	② (현행과 같음)		
	③		
			· <u>법원</u> -
			<u>нс</u>
		<u>법원</u>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	<u>]</u> 의 시	-무국정	당은 저	]외한
다) 및	국장,	가정법	법원 시	무국
장, 행정	법원	사무국	'장, 호	생법
원 사무	국장	및 대	법원규	'칙으
로 정하	는 지	원의	사무국	강은
법원부이	]사관	또는	법원서	기관
으로 보	하며,	과장은	는 법원	]부이
사관 • 법	<b>네윈서</b>	기관 •	법원시	무관
또는 등	기사무	관으로	보 보한	다.

④ (생략)

제27조(부) ① ~ ③ (생 략)

-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u>지방법원</u>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수 있다.
- ⑤ 대법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

	<u>법원</u>
	,
4	(현행과 같음)
제27	조(부) ① ~ ③ (현행과 같
음)	
4	
	<u>법원</u>
5	
법.	<u>원</u>
제283	조(심판권)

- 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 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 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 한다.
-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 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 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 칙으로 정하는 사건
- 3. (생략)

### 제3장 지방법원

- 제29조(지방법원장) ① 지방법원 저 이 지방법원장을 둔다.
  - ② <u>지방법원장</u>은 판사로 보한 다.
  -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u>지방법원장</u>이 궐위되거나④ <u>법원장</u>

,
1. 법원
2. 법원단독판사
3. (현행과 같음)
<u>제3장 법원</u>
ll 29조(법원장) ① <u>법원에 법원장</u>
<u>.</u>
② <u>법원장</u>
③ <u>법원장</u>
에 버의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	
사, 선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⑤ <u>지방법원</u> 에 대해서는 제26	⑤ <u>법원</u>
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30조(부) ① <u>지방법원</u> 에 부(部)	제30조(부) ① <u>법원</u>
를 둔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방법원</u> 에 대해서는 제27	③ 법원
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지원) ① <u>지방법원</u> 의 지원	제31조(지원) ① <u>법원</u>
과 가정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지원장은 소속 <u>지방법원장</u>	③ <u>법원장</u>
의 지휘를 받아 그 지원과 관	
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④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b>4</b>
은 소속 <u>지방법원장</u> 의 지휘를	<u>법원장</u>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등기소	
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	
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u>지방법원</u> 의 지원과 가정지	⑤ <u>법원</u>
원에 부(部)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부를 두는 <u>지</u>	⑥발

<u>방법원</u>의 지원과 가정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 조제2항을 준용한다.

-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u>지방</u>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1. ~ 4. (생 략)
  - 5. <u>지방법원판사</u>에 대한 제척 · 기피사건
  - 6. 다른 법률에 따라 <u>지방법원</u>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u>지방법원</u> 본원 합의부 및 <u>춘천지방법원</u> 강릉지원 합의부는 <u>지방법원단독판사</u>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 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33조(시·군법원) ①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 판사 중에서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

<u>원</u>	 		
제32조(합의· 	심판건	<u>d</u> ) (1	) <u>법원</u> 
1. ~ 4. ( 5. <u>법원판</u> 			
6			
② <u>법원</u> - <u>법원</u> 단독판사-	 		- <u>법원</u>
 제33조(시 • ·	원) ①		
<u>법원</u>	 		

- 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명 의 판사를 둘 이상의 시·군법 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 ② 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 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 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생 략)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사건은 그 시·군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생 략)
- 제36조(등기소) ① · ② (생략)
  - ③ 소장은 소속 <u>지방법원장</u> 또 는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u>.</u>
②
법원장
· 
제34조(시・군법원의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원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등기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원장
<u> дчо</u>

의 지휘를 받아 등기소의 사무를 관장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4조(보직) ① (생 략)

-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 법원장, 회생법원장은 15년 이 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 제55조(집행관) ① <u>지방법원</u> 및 그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집행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u>지방법원장</u>이 임면(任免)한다.
  - ② (생 략)
  - ③ 집행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 <u>지방법원</u>에 보증금을 내 야 한다.
  - ④ (생 략)
-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 재판부의 설치) ① (생 략)
  -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 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u>지</u>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2
_ <u>법원장</u>
_ <del></del>
제55조(집행관) ① <u>법원</u>
<u>법원장</u>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
· 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
재판부의 설치) ① (현행과 같
음)
2
<u>법</u>

<u>방법원</u> 의 장은 제1항에 따른	<u>원</u>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	
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	
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	
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